PART 5

해외 농업·농정 동향

1. EU 16개 회원국, GMO경작 금지 신청
2. EU 회원국 정부, GMO관련 공동선언 발표
3. 유럽의회, EU집행위원회의 GMO 자율운영제 제안 반대
4. EU, 새로운 유기농관련 규정 채택
5. EU, TTIP와 아태지역의 새로운 무역전략 발표
6. IARC, 육가공식품과 적색육 발암물질로 분류
7. WTO농업위원회, 중국과 인도 등 농업지원정책 압박

해외 농업·농정 동향 (2015. 11)



EU 16개 회원국, GMO경작 금지 신청

EU내 총 16개 회원국(또는 지역), 유전자변형작물 경작 금지 신청

❍ 기존 7개국에 더해 추가적으로 9개 회원국 및 지역이 이미 허가되었거나 허가가 진행 중인 유전자변형작물(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GMO)에 대한 경작 금지 의사를 EU집행위원회에 밝혔음.

- 금주까지 총 유전자변형작물 경작금지 국가는 총 14개국이었으나, 이탈리아와 덴마크가 추가되어 총 16개국이 유전자변형작물 경작금지 의사를 밝혔음.

❍ 유전자변형작물의 경작에 대한 EU의 개정 지침은 지난 4월부터 발효되었음.

- 이로 인해 각국 정부는 환경 및 보건에 대한 위험이외의 이유를 근거로 EU의 허가방침과 별도로 자율운영제(opt-out)를 선택할 수 있음.

❍ 2015년 9월 30일, 불가리아, 키프로스 그리고 독일은 EU집행위원회에 새로운 규정의 '선택권 1'을 적용하고자 한다고 밝혔음.

- 특히 독일은 결정사항의 일부로 연구목적의 유전자변형작물 재배는 허용하기로 함.

❍ '선택권 1'이 적용될 경우, 해당 유전자변형작물의 경작은 일정한 지리적 범위 내에서만 허가됨.

- 즉, 해당 유전자변형작물은 특정 회원국이나 특정 지역 내에서 재배가 금지되는 것임.

❍ 회원국들은 10월 3일까지 이미 허가되었거나, 허가 진행 중인 유전자변형작물에 대한 '선택권 1'을 적용하는데 있어 6개월 간 과도기 설정 계획을 EU집행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 지난 며칠 간 오스트리아, 헝가리, 네덜란드, 폴란드, 벨기에도 EU집행위원회에 이미 허가되었거나 허가 진행 중인 유전자변형작물 경작금지 계획을 밝혔음.
- 또한 금월 그리스, 라트비아, 스코틀랜드의 뒤를 이어 크로아티아와 북아일랜드, 프랑스와 리투아니아가 자율운영제(opt-out)를 채택하였음.

유전자변형작물 경작금지 국가 증가

❍ 총 14개국이 유전자변형작물 경작금지를 채택한 가운데 EU집행위원회는 환경 및 식품안전위원회 대변인(Enrico Brivio)은 남은 기간(10월 1, 2일) 동안 더 많은 회원국이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음.

❍ 현재 'MON810'이외에 EU에서 경작이 허가된 유전자변형 옥수수의 품종은 없으며 다른 9개의 품종이 허가를 기다리고 있음.

- 그 중에는 Dupont Pioneer사(社)의 '1507' 품종이 있으며 동 품종은 곧 승인될 전망임.
- 나머지 유전자변형작물들은 현재 최종 허가절차가 진행 중임.

❍ EU 회원국들은 EU집행위원회에 유전자변형작물 경작금지 의사를 밝히며, 허가절차가 진행 중인 대다수 품목을 금지할 것을 요청하였음.

- 여기에 포함되는 품종은 유전자변형 옥수수 '59122', 'BT11', 'BT11xMIR604xGA21', 'GA21', 'MIR604', '1507x59122'등임.

'선택권 2'

❍ '선택권 1'의 신청기한은 곧 종료되지만 회원국들은 '선택권 2'의 국가별 자율운영의 자치권(opt-out) 조치를 선택할 수 있음.

❍ EU의 새로운 유전자변형작물 규정 하에서 회원국 정부는 특정 유전자변형작물에 대해서 국가차원의 금지조치를 취할 수 있음.

- 금지조치는 작물의 종이나 특징을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음.

❍ '선택권 2'는 해당 작물에 대해 '선택권 1'이 적용되지 않았을 경우, 허가절차를 거쳐 적용될 수 있음.

❍ 회원국들은 유럽식품안전청(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EFSA)이 새로운 유전자변형작물의 경작 허가를 위한 안전평가를 수행하더라도 여전히 해당 작물에 대해 '선택권 1'을 적용할 수 있음.

- '선택권 1'은 특정 작물을 재배하려는 생산자에게 경작가능한 지역의 범위를 제한하도록 강제하는 것임.

❍ EU집행위원회는 지난 4월 식품 또는 사료용으로 수입되는 유전자변형작물에 대

한 국가수준의 자치적인 자율운영시스템을 제안함.

- 동 시스템은 새로운 유전자변형작물 경작 규정에 상당부분 근거하고 있음.

❍ 그러나 유전자변형작물 관련 업계와 유전자변형작물에 반대하는 환경단체는 서로 다른 이유로 EU집행위원회의 정책을 반대하였음. 또한 다수의 유럽의회의원들도 동 정책을 반대하였음.

- 유럽의회 환경위원회(ComEnvi)의 수석 조사위원(Giovanni La Via) 또한 동 정책을 반대할 것을 요청하였음.

❍ 이러한 이유로 현재, 동 정책이 초기 계획대로 채택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임.

※ 자료: Agra Europe Weekly(2015.10.02.)

EU 회원국 정부, GMO관련 공동 선언 발표

❑ EU내 7개 회원국 정부, '유전자변형작물(GMO)없는 농업 모델' 개발에 대해 공동 요청

❍ EU농업위원회에서 7개 회원국 정부가 공동으로 EU 내 "유전자변형작물(GMO)없는 농업 모델"을 개발할 것을 공동으로 요청하였음.

- 유전자변형작물이 포함되지 않은 사료개발과 유전자변형작물 정보표기에 대한 협력적인 움직임을 촉구하였음.

❍ 2015년 10월 22일 룩셈부르크에서 개최된 농업위원회에서 EU집행위원회와 회원국 농업부 장관들은 금번 '공동 선언'에 대해 논의하였음.

- 금번 '공동 선언'에 이탈리아, 폴란드, 오스트리아, 헝가리, 슬로베니아, 리투아니아, 키프로스가 참여함.
- 또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와 코소보, 마케도니아 구 유고슬라비아 공화국, 세르비아도 참여함.
- 공동 선언의 목적은 식물다양성, 환경 및 생산방법의 다양성에 위협을 가하지 않으면서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농식품을 보장을 주장하기 위함임.

❍ 또한 유전자변형작물 경작이 장기적으로 환경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의문점이 남아있다고 주장함.

- 이에 유전자변형작물이 없는(GMO-free) 경작구역 확보를 위하여 회원국들의 공동의 접근방법이 필요하다고 촉구함.

❍ 금번 선언문은 지난 8월 슬로베니아에서 개최된 EU 회원국 장관회의에서 채택되었으며, 2015년 10월 22일 농업위원회 회의에서 논의되었음.

- 선언문에 따르면 EU 내 수입산 유전자변형 단백질 공급원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유전자변형원료가 없는 식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회원국들의 협조가 필요함.
- 또한 소비자들에게 믿을 수 있는 식품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성하다고 강조하며, 전 유럽을 걸쳐 식품 및 사료에 대해 '유전자변형생물 미포함(GMO-free)'의

표기제도를 확대 시행할 것을 주장함.

- 현재 EU집행위원회는 식품 및 사료의 유전자변형생물 포함여부에 대한 표기를 회원국 정부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 EU 보건및소비자총국 집행위원(Vytenis Andriukaitis)은 EU집행위원회는 선언문을 주목하고 있으며, EU집행위원회의 일부 계획들은 선언문의 내용에 부합한다고 언급함.

- 그러나 제기된 환경파괴 우려와 관련하여 유럽식품안정청(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EFSA)이 실시하는 위해성평가가 EU집행위원회의 유전자변형작물 경작지침의 초석이며, 위해성평가 결과에 따르면 EU내 유전자변형작물의 경작은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하였음.

❍ 그리스와 슬로바키아 등의 대표단도 공동 선언문을 지지하였음.

- 일부 회원국들은 수입되는 사료용 유전자변형 콩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존하는 문제를 지적하였으며, 이탈리아는 '유전자변형생물 미포함'의 표기제도가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그러나 영국과 스페인은 이러한 의견에 반대했으며, 네덜란드도 잠재적으로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함.

EU집행위원회의 '자율운영제'에 대한 비판

❍ 공동선언문의 참여국은 EU집행위원회가 제안한 유전자변형식품 수입에 대한 회원국별 자율운영제(opt-out)에 대해 논의함..

-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유전자변형식품 수입에 대한 자율운영제에 대해 반대했으며 이에 유럽의회는 동 제도를 거부할 예정임.
- 선언문의 참여국은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지만, 자율운영제로 인한 EU의 단일시장 개념을 훼손과 시장경제 왜곡에 대한 우려가 다시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함.
- 또한 자율운영제가 시행되더라도 회원국들은 유전자변형식품 수입을 금지하기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갖추기 어렵다고 주장함.

❍ 그러나 EU집행위원회위원(Andriukaitis)은 이러한 입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함.

- 그는 10월 22일 농업위원회에서 발표된 선언문에 대해 놀라움을 표하며, 자

율운영제가 시행되면 회원국은 유전자변형생물을 '국가·사회적 이유' 등으로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자율운영제를 지지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언급함.

❍ 유럽의회에 따르면 10월 28일 의회에서 유전자변형작물 수입에 대한 회원국의 자율운영제가 부결될 것은 거의 확실하다고 함. 또한 많은 회원국 정부의 반대로 현재 EU집행위원회는 자율운영제 관련 지침에 대한 준비를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함.

※ 자료: Agra Europe Weekly(2015.10.23.)

유럽의회, EU집행위원회의 GMO 자율운영제 제안 반대

❑ 유럽의회의원들, EU집행위원회의 유전자변형식품 및 사료 수입에 대한 자율운영제관련 제안 반대

❍ 2015년 10월 28일 스트라스부르에서 개최된 총회 투표에서 유럽의회의원들(Members of the European Parliament, MEP) 대부분은 유전자변형식품 및 사료 수입에 대한 회원국 자율운영제(opt-out)에 대해 반대함.

- 투표결과는 찬성 557표, 반대 75표, 기권 38표임.
- 자율운영제는 회원국들이 위해성 평가기관인 유럽식품안전청(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EFSA)이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위험과 관련이 없다는 평가결과에 따라 승인한 유전자변형작물 수입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는 것임.

❍ 유전자변형식품 수입에 대한 회원국의 자율운영제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서 거부됨.

- 2015년 10월 13일, 환경위원회(Environment Committee, ComEnvi)는 지난 4월 EU 집행위원회의 제안안에 대해 반대함.
- 다양한 영역의 정치인들, 생명공학산업체, 환경운동단체 등 모두가 자율운영제에 대해 반대하는 가운데 여러 회원국 정부들은 무역과 관련한 법적 문제에 대한 영향평가와 설명을 요구하며 상당한 의구심을 제기함.
- 2015년 10월 28일의 투표결과 발표 이후 유럽연합농업협동조합협회(Copa-Cogeca), 유럽바이오산업연합(EuropaBio)을 비롯한 EU 내 식품 및 사료산업 관계자들은 유럽의회의 결정에 동조함.

❍ 투표에 앞서 유럽의회 환경위원회 조사위원(Giovanni La Via)은 동 계획은 일반적으로 EU 내 농업 및 축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고 언급하였음.

- 또한 단일시장과의 호환성 측정과 계획의 실현가능성 여부에 대한 영향평가가 부족함.
- 사료에 대한 의존성과 재정적으로 가능한 대안 부족으로 미루어 볼 때 축산업관련 종사자들은 유전자변형식품 및 사료의 수입 반대를 결정한 회원국에

의해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함.

- 최근 연구에 따르면, 만일 모든 회원국이 유전자변형식품 및 사료 수입에 대한 자율운영제를 실시한다면 약 28억 유로의 비용이 발생할 것이고, 잠재적 후보로 간주되는 4개국이 자율운영제를 실시할 경우 약 12억 유로의 비용이 발생할 것임.

EU집행위원회의 반응

❍ EU집행위원회 보건 및 식품안전국 집행위원(Vytenis Andriukaitis)은 역설적 상황의 해결을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함.

- EU집행위원장은 유럽의회의원들의 반대에 유감을 표명하며 '국가의 정치적 동기' 때문에 회원국들이 유전자변형식품 수입에 동의할 수 없는 것이라고 현 상황을 설명함.
- 또한 EU집행위원회가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유럽의회 의원들이 자신의 견해를 확고히 결정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는 상임위원회와 항소위원회를 통해 두 번에 걸쳐 협의하는 절차를 상기시킴.
- 그러나 유럽의회에서 유전자변형식품 수입과 관련한 지지 또는 반대에 대한 가중다수결에 이르지 못했으며, 이는 EU집행위원회의 지속적인 결정권한을 의미한다고 언급함.
- 회원국 내에서의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볼 때 EU집행위원회는 시민들의 의견을 회원국들이 반영할 수 있도록 다시 회원국에게 자치권을 부여하고자 한다고 언급함.

❍ 투표에 앞서, EU집행위원(Vytenis Andriukaitis)은 EU의 현 제도적 체계와 법률을 존중하는 반면 작금의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은 모르겠다고 언급함.

- 단지 유전자변형식품 수입에 대한 EU집행위원회의 권리와 의무(comitology) 규정의 변화는 다른 시스템의 사전 승인과 마찬가지로 동등한 처리의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 말함.
- 이는 또한 EU집행위원회의 결정권한을 허용할 수 없는 문제를 불러올 것임.
- 또한 28개 회원국들의 인구 가중치와 민주적 균형을 보장하는 EU조약에 명시된 바와 같이 투표규칙의 변경 또한 문제가 될 것임.

정치그룹의 반응

❍ 국민당(European People's Party, EPP)의원(Pieter Liese)은 소비자와 농부들에 혼란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언급하며, 국가적으로 수입을 금지하는 것은 식품 및 사료에 대한 경제 통제의 재도입을 의미하며, 이것이 유럽의회가 그러한 무책임한 제안에 반대하는 이유라고 밝힘.

❍ 유럽의회의원들은 EU집행위원회의 새로운 제안 마련을 요구함.
- 사회민주당(Socialist and Democrat, S&D)의 대변인(Matthias Groote)은 EU 내부 시장의 효율적인 기능을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제안이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함.
- 동시에 회원국들이 원할 때 유전자변형식품 및 사료의 사용을 효과적으로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한다고 주장함.

❍ 유럽녹색당(European Green Party, EGP) 대변인(Bart Staes)은 EU의 유전자변형식품 수입 승인절차 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함.
- 결함이 있는 위해성평가와 회원국 정부와 시민 다수의 일관된 반대에도 불구하고 현 승인 과정을 지속할 수 없음.

❍ 유럽 보수당과 유럽의회의원 개혁주의자(Julie Griling)는 대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EU집행위원회의 제안 철회에 대한 반대는 더 나은 규제 의제에 위배된다고 언급함.
- EU 내에서는 가축을 위한 충분한 단백질 사료를 생산 할 수 없으며, 축산업을 유지하기 위해 유전자변형사료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EU집행위원회의 제안은 농업부문을 정치부문과 겨루는 것과 같이 위험하며, 과학 및 EU자문기관의 조언을 방관함.

향후 일정

❍ Agra Europe에 따르면 유럽의회가 EU집행위원회의 제안 철회를 요구하였으며 이사회의 룩셈부르크 회장단은 향후 수일 내 진행과정을 결정할 것임.
- 이미 EU집행위원회의 제안에 대한 회원국의 비난이 있었으므로 이사회에서 동 제안안을 채택할 가능성은 낮음.

❍ 회원국 간의 이견을 명확히 검토하기 위해 분과위원회(working group) 회의가 몇 주간 진행될 예정임.

- 한편, 총 19개 회원국들은 위해성 평가를 통과한 유전자변형작물 경작과 관련한 자율운영제의 새로운 법안 활용과 위해성 평가에 대한 정보를 받음.

※ 자료: Agra Europe Weekly(2015.10.30.)

EU, 새로운 유기농관련 규정 채택

유럽의회의원들(MEPs), 유기농생산자들을 위한 새로운 유기농규정 채택

❍ 유럽의회의원들(MEPs)은 유기농부(organic farmers), 가공자(procesoors), 상인(traders), 수입업자(importers)들이 “높지만 실질적으로 지속가능한 기준”을 충족하여야하며, EU유기농식품표시(EU organic label)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식품 검열 및 진위확인을 엄격히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함.

❍ EU집행위원회는 2013년 3월, 생산, 마케팅 그리고 유기농식품 교역에 초점을 맞춘 유기농관련 규정(2007)의 개정을 제안한 바 있음.

- EU집행위원회의 유기농관련 규정의 개정으로 유기농식품 생산이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확대되었음.

❍ 유기농관련 규정(2007)의 개정에 대한 EU집행위원회의 제안은 두 가지 핵심 요소로 나뉨.

- 비(非) 인증물질의 존재(잔류 농약, 중금속 추적에 대한 기준치)와 유기농 보유에 대한 통제 빈도로 나뉨.

위험기반의 통제

❍ EU농업위원회(agriculture committee)에 따르면 유기농업은 “식품 사기 방지를 위한 맞춤형 통제 체제”를 필요로 한다고 주장함.

- 유럽의회의원들(MEPs)은 EU집행위원회가 제안한 위험기반 통제체제 계획에 대해 지지하였으나 모든 유기농장에 적어도 1년에 한 번, 실질적 현장점검을 포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였음.

❍ 유럽의회의원들(MEPs)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소비자들에게 유기농식품의 진위를 보장하기 위하여 생산, 제조, 유통의 모든 단계에서 각 유기농식품을 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함.

❍ 그러나 회원국들은 회원국정부가 실질적 현장점검 횟수를 조정하여 관련 점검 규

정에 대한 최고 준수기록(the best compliance records)을 유지하는 선에서,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30개월에 한 번씩 실질적 점검을 시행하기를 원함.

농약에 대한 특정 기준치 설정 대신 예방조치 도입

❍ EU집행위원회는 비(非)인증물질과 관련한 조화로운 EU규정안을 제안함.
- 비(非)인증물질과 관련하여 1kg 당 0.01mg의 공동 기준치에 미치지 못하는 제품은 유기농식품으로 판매될 수 없도록 규정함.
- 그러나 일부 회원국만이 이에 동의하였으며, 대부분은 국가들의 기존 기준치를 2020년 말까지 유지할 수 있는 타협점을 원함.

❍ 독일 녹색당의원(Martin Häusling)은 기준치 대신 "예방 조치"라는 아이디어를 제안함.
- 이는 유기농식품 관련 전체 공급망 걸쳐 운영자들의 책임을 증가시키고, 비(非)승인기술의 사용 제한 및 방지를 목표로 함.

❍ 유럽의회의원들(MEPs)의 제안에 따르면, EU 유기농관련 규정에 위반되거나 비(非)승인 농약 검출이 의심될 경우, 해당 농식품은 추가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유기농관련 표기를 할 수 없음.
- 적절한 검사를 통해 오염이 불가피한 경우와 유기농부가 모든 사전조치를 적용했던 것이 판명된 경우에만 유기농식품으로 표기되어 판매될 수 있음.

기타 사항

❍ EU농업위원회는 EU집행위원회의 혼합농장계획에 대해 반대하였음.
- 혼합농장은 기존 농업활동들이 유기농업 활동들과 명확하게 분리되며 차별화됨을 전제로 기존 농식품과 유기농식품 모두를 생산하는 농장임.

❍ 유럽의회의원들(MEPs)은 소규모 농부들을 유기농업으로 보다 쉽고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집단인증(group certification)시스템을 지지하였음.

❍ 또한 모든 수입품에 대하여 EU규정을 확실히 적용하기 위한 EU집행위원회의 초기제안을 지지하였음.

❍ 유럽의회의원들은 제3국이 유사하지만 동일하지는 않은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현재의 규정이 향후 5년 내 단계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그러나 유럽의회의원들은 EU내 시장공급의 갑작스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EU 집행위원회가 최대 2년 간 기후 조건과 동일한 이유로 인해 EU 규정을 완전히 따르지 않는 일부 제품들에 대한 수입 요구사항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함.

❍ 세계유기농업운동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Organic Agriculture Movements, IFOAM)은 비(非)승인물질에 대한 인가 취소(decertification) 임계치 제안에 관한 농업 위원회의 반대를 지지하며 오염된 사례에 대해 더욱 통일된 검사절차를 요구함.

※ 자료: Agra Europe Weekly(2015.10.16.)

EU, TTIP와 아태지역의 새로운 무역전략 발표

EU집행위원회, 새로운 무역 및 투자 전략 발표

❍ EU집행위원회는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TTIP)과 같은 양자(bilateral) 및 지역(regional)무역협정과 아태지역에서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무역 및 투자전략을 발표함.

❍ 2015년 10월 14일, 무역 및 투자전략(Trade for All: Towards a more responsible trade and investment policy)이 착수됨.

- 현재 진행 중인 WTO도하라운드, EU-미국 TTIP, EU-일본 FTA, EU-중국 FTA 등의 무역협정과 관련한 주요 프로젝트에 우선순위를 둠.

❍ 2015년 10월 5일, 세계 12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이 타결된 이후, EU는 아태지역을 목표로 하는 전략을 수립함.

❍ EU집행위원회는 호주, 뉴질랜드와의 FTA 협상에 대한 권한을 요청할 것이며, 적절한 시기에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와의 새로운 아세안 FTA 협상을 시작할 예정임.

- 호주, 뉴질랜드와의 FTA는 유제품, 쇠고기, 유채 등 수많은 농산품 무역에 큰 영향을 미침.
- 또한 EU집행위원회는 야심찬 목표를 수립하여 중국과의 무역협상을 계획하고 있으며, 아프리카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터키, 멕시코, 칠레와의 기존 FTA를 현대화할 계획임을 밝힘.\

무역 및 투자 전략의 원칙

❍ EU집행위원회의 새로운 무역 및 투자전략은 '효율성(effectiveness)', '투명성(Transparency)', '가치(Values)' 의 핵심적인 세 가지 원칙에 기반함.

- 투명성: 타결된 모든 협상의 주요 내용을 공개하며, 무역협상 개최 시 투명성을 강화하여 대중들이 FTA협상과 관련된 무역정책 결정에 참여하도록 함.
- 가치: EU집행위원회 세계시장에서 EU의 지위를 강화하고 가치를 높이기 위

하여 “무역협정과 선호 프로그램(preference programmes)을 지렛대로 활용할 것임을 주장함. 이는 TTIP협상에서 식품안전과 품질기준 관련 이슈에 대한 ‘하향 출혈경쟁(race to the bottom)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보임

- 효율성: 효율성 강화를 위해 EU집행위원회는 새로운 경제현실을 고려하여 무역정책 갱신, 중소기업을 위한 효율적인 FTA조항 설정, 회원국, 유럽의회 및 관련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관계 강화 등을 목표로 함.

※ 자료: Agra Europe Weekly(2015.10.16.)

IARC, 육가공식품과 적색육 발암물질로 분류

국제암연구소(IARC), 육가공식품과 붉은 고기 발암물질로 분류

❍ 국제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sation,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The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IARC)는 육류섭취 제한 보고서를 발표함.

- 육류섭취와 관련된 직접적인 위험이 아니라 “위험성”을 평가하는 것을 강조하며, 육가공식품을 "인체에 암 유발(carcinogenic to humans)", 적색육을 “준 발암성(probably carcinogenic)"으로 분류함.
- 육가공식품에는 햄, 베이컨, 살라미, 소시지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적색육에는 소고기 돼지고기 등이 포함됨.

❍ 국제암연구소(IARC)는 2015년 10월 26일 성명을 통해 육류섭취와 암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를 철저히 검토한 결과를 종합하여 암 유발 효과에 따른 분류를 발표함.

- 그러나 북미육류협회(US North American Meat Institute, NAMI)는 올해 초기에 글리포세이트(glyphosate)생산자가 널리 사용되는 제초제를 “준 발암성”으로 분류한 것과 같이 IARC가 “이론적 위험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함.
- IARC의 육가공식품 및 적색육에 대한 평가는 인체에 암을 유발하는 환경적 원인을 파악하고 평가하는 ‘모노그래프 프로그램’의 일환이며, 이는 현재 글리포세이트를 포함하여 900개 이상의 물질을 검토해오고 있음.
- 동 분류체계는 특정 물질에 대한 노출의 결과로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아니라, 특정 물질이 암을 유발할 수 있는지의 위험성 여부와 관련한 증거의 가중치 나타냄.

IARC의 육류 평가 및 분류

❍ 10개국 22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IARC 실무그룹은 육류와 관련하여 평가를 수행함.

❍ 적색육 섭취는 발암물질(준 발암성) 가능성이 있으므로 발암 위험물질 2A군으로 분류함.

- 적색육 섭취가 인체에 암을 유발한다는 제한된 증거와 발암 효과를 지지하는

기전적 증거(mechanistic evidence)를 근거로 함.
- 이는 주로 직장암의 경우에서 관찰되며, 또한 췌장암 및 전립선암에서도 관찰됨.

❍ 육가공식품 섭취가 대장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충분한 증거를 바탕으로 육가공식품을 1군 발암물질(발암성)로 분류함.
- 매일 50g만큼의 육가공식품 섭취는 대장암의 위험성을 18%만큼 증가시킨다고 결론 내림.

❍ 적색육은 소, 송아지, 돼지, 어린 양, 양, 말, 염소 고기 등과 같은 "모든 종류의 포유류의 살코기"로 간주함.

❍ 육가공식품은 염장, 절이기, 발효, 훈제 등 맛과 보존을 향상 시키는 기타 처리를 통해 변형된 식품으로 간주함.
- 육가공식품은 주로 돼지 또는 소고기를 포함하지만 기타 붉은 고기, 가금류, 동물의 내장, 또는 혈액과 같은 부산물 고기를 포함함.

육류산업계의 반발

❍ 북미육류협회(North American Meat Institute, NAMI)는 IARC의 보고서 결과를 반박함.
- 북미육류협회는 IARC 보고서 결과에 대해 불필요한 우려를 자아내는 분류라고 비판하며 육류섭취와 암의 상관관계는 없다고 반박함. 또한 동 연구결과는 육류를 포함한 균형 잡힌 식단에 따른 건강상의 이점을 증명하는 일반상식이나 많은 연구들을 무시한다고 주장함.

❍ 주요 미국육류무역협회는 암은 복합성 질병으로 특정 단일식품에 의해 발병되는 것이 아니라고 언급하며, 건강에 대한 보다 명확한 과학적 근거는 균형잡힌 식단과 건강한 삶의 선택이 필수적임을 보여준다고 반발함.

❍ 미국 육류산업관련협회는 IARC가 와인을 발암성으로 커피, 알로에 베라 등을 준발암성으로 분류한 것에 대해 조롱함.

❍ 육류산업관련 기업은 데이터검토가 불완전하였으며, 연구결과는 EU와 미국의 엄격한 규제체제에 모순된다고 주장함.
- 동 의견은 현재 EU의 글리포세이트에 대한 권한 검토를 위한 '갱신 평가 보

고서(Renewal Assessment Report)' 초안을 작성하는 독일의 국가위험평가기관에 의해 지지됨.

❍ IARC는 육류섭취와 암유발 상관관계를 연구하는 실무그룹이 12개 이상의 암 유형에 따라 상관관계를 조사하는 800개 이상의 세계 연구들을 조사했다고 주장함.

- 특히 지난 20년간의 "대규모 전향성 추적조사인 코호트연구(Cohort study)"를 통한 연구결과임.
- 육류섭취에 따른 세부 평가결과는 IARC 모노그래프의 Vol. 114에 공표될 예정임.

※ 자료: Agra Europe Weekly(2015.10.30.)

WTO농업위원회, 중국과 인도 등 농업지원정책 압박

2015년 9월 25일 WTO 농업위원회 회의에서 중국과 인도의 농업지원 정책에 대한 이슈가 제기됨.

❍ 중국 대표단은 세계무역기구(WTO) 농업위원회 회의에서 제기된 다양한 문제에 대해 답변함.

- 미국 등 여러 국가들이 중국의 농업지원정책이 WTO의 규정과 상충되는 호환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자 중국은 이에 대해 자국의 농업지원정책들을 변호한 바 있음.
- 중국의 농업지원정책은 2009년과 2010년에 입법되었음.
- 당시 회의에서 인도 또한 자국의 가격지원정책과 수출정책의 정당성에 대한 문제로 압박을 받았음.

❍ WTO 회원국들은 농업위원회를 통해 자국의 농산물 무역정책을 검토하며 WTO 협정과의 호환성 문제가 없는지 확인할 수 있음.

- 그러나 일부 국가들은 최근 자료를 제공을 꺼리며 수년 전의 자료로 검토하는 경우도 있음.

❍ 금번 WTO농업위원회 회의는 지난 6월 농업위원회 회의에 이어 진행되었음.

- 중국은 2009-2010년의 면화 저장에 대한 자국의 농가지원정책의 규모에 대해 지적을 받았음. 이에 대해 중국은 WTO 협의사항에 맞추어 농가지원정책을 실시하였다고 주장하였음.
- 인도는 2004-2011년간의 농가지원정책과 설탕에 대한 수출보조금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음.

중국의 입장 변호

❍ WTO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6월 회의에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보다 상세한 답변을 제시하였으며, 효과적으로 다른 국가들의 의혹을 해소하였음.

❍ EU는 중국이 식품안보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비축에 대한 지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음.

- 이에 대해 중국은 정부가 진행하는 모든 상품 구매는 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가격이 결정되며 이는 WTO의 허용보조(Green Box, 무역왜곡 효과가 미미하여 감축의무가 없는 보조금)기준에 부합한다고 밝혔음.

❍ 미국이 제시한 시장가격지원정책에 대해 중국은 현재의 임시 비축분은 곡물 생산을 안정화하고 시장 변동 상황에서의 공급을 안정화하며 농가의 생계를 돕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힘. 또한 매입가격은 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결정되며 비축량 또한 제한 범위를 설정하였다고 주장함.

❍ 또한 미국과 유럽은 중국의 면화지원정책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세계 시장에 미칠 왜곡효과에 대해 우려를 표명함.

- 중국은 이에 대해 지원정책은 대부분 빈곤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생산자들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해당 정책이 수입에 대해 악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주장함. 따라서 최근 세계 폴리에스테르(polyester)소비 증가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함.

인도의 설탕과 면화 지원정책 관련 문제

❍ 지난 6월 인도는 공공비축과 2004-2011년간 농가지원, 그리고 최근 원당(raw sugar)에 대한 수출보조금 상향조정에 대해 지적을 받음. 이에 대한 검토는 9월 25일의 WTO농업위원회 회의에서도 계속되었음.

❍ EU와 호주는 인도가 2015년 2월 원당에 대한 수출보조금 요율 상향조정에 대해 재차 문제를 제기하였음.

- 원당에 대한 수출보조금이 인상되면서 현재 원당가격은 세계 기준가격보다 25% 이상 높은 수준으로 증가되었음.
- 인도는 동 정책이 수출보조금이 아니라 일종의 '생산다양화 정책'의 일환이었다고 언급하였음.
- 인도의 원당은 현재 스리랑카, 이라크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연합(UAE)으로만 수출되고 있음.

❍ 콜롬비아와 브라질은 인도 측에 지난 2013년 말, 발리회담에서 채택된 수출경쟁 제한에 관한 협의사항을 존중할 것을 촉구하였음.

❍ 반면 호주는 금년 8월 1일부터 시행된 인도의 설탕수출할당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음.
- 인도의 설탕수출할당제는 인도의 모든 설탕 공급자에 대해 최소 수출할당을 설정하는 제도로 할당 총량은 400만 톤에 달하며, 이는 세계 설탕교역량의 8%를 차지함.
- 호주 측 질문에 대해 인도는 다음번 회의에서 이에 대한 답변을 하겠다고 함. 다음 회담은 2016년 초에 있을 예정임.

❍ 미국은 인도에게 최근 면화에 대한 최소지원가격 상향조정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였음.
- 인도는 이에 대해 가중평균생산비용의 상승에 기인한 것이라고 답변하였음.

❍ EU집행위원회는 또한 인도 펀자브(Punjab)지역에서 최근 밀에 대한 최소지원가격을 상향조정하였다는 소문에 대해 주목하였음.
- 인도는 이에 대해 부인했으며 지원가격은 지방정부가 아닌 인도 중앙정부가 설정하고 있다고 답변함.

❍ 반면 스위스는 추가적인 수출보조금으로 2,000만 스위스프랑(Swiss francs, 1,900만 유로 이상)을 지원한 것에 대해 EU, 호주, 뉴질랜드,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등 대표단의 지적을 받음.
- 이는 기존 보조금에서 3분의 1 이상 인상된 규모임.
- 스위스 대표단은 스위스 중앙은행이 스위스프랑화(貨)의 유로에 대한 환율 고정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한 "예외적인 상황" 때문에 수출보조금이 불가피했다고 밝혔음. 하지만 EU와 다른 국가들은 그것이 타당한 이유라고 할 수 없으며 수출경쟁에 대한 발리협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함.

❍ 금번 회의에서 호주와 뉴질랜드는 스리랑카가 분유 수입관세를 높인 것에 대해 비판하였음.
- 이에 대해 스리랑카는 자국 내 낙농업자들을 보호하고 수출입 균형을 조절하기 위한 임시적인 조치일 뿐이라고 답변하였음.

※ 자료: Agra Europe Weekly(2015.10.02.)

자료 작성: 홍예선 연구원